

서울특별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2호)

제 안 설 명



2022. 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3선거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하나,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제안 설명 드
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
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서 공기
정화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공기정화설비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
설비는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의규정을 신설
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